

## 「국채사무취급절차」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<b>제13조(입찰발행) ① (생략)</b>                      ② 일반인으로부터 국고채입찰 참여신청 또는 <u>물가연동국고채 인수신청</u>을 받은 국고채전문딜러는 국고채권일반인 우선배정신청서&lt;별지 제3-3호 서식&gt;를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설)</p> <p>③ 경쟁입찰은 감사실 검사역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. 다만, 전자입찰, 모사전송입찰 및 전자우편입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<b>제13조(입찰발행) ① (현행과 같음)</b>                      ② 일반인으로부터 국고채입찰 참여신청을 받은 국고채전문딜러는 국고채권일반인우선배정신청서&lt;별지 제3-3호 서식&gt;를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국고채전문딜러가 국고채권 비경쟁인수를 신청하거나 비경쟁인수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전문딜러는 국고채권비경쟁인수신청(취소)서&lt;별지 제3-4호 서식&gt;를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경쟁입찰은 감사실 검사역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. 다만, 전자입찰, 모사전송입찰 및 전자우편입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- 물가연동국고채 입찰방식이 경쟁입찰로 변경되어 삭제</p> <p>- 국고채전문딜러의 국고채권비경쟁인수신청(취소)서 제출의무 명시</p> <p>- 항 내림</p>
<p><b>제47조(상위직급자의 거래 승인)</b> 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 그 상위직급자로부터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<u>3. 물가채 일반인 한도 및 배정 관리 업무</u></p> <p>4. ~ 9. (생략)</p>	<p><b>제47조(상위직급자의 거래 승인)</b> 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 그 상위직급자로부터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삭제)</p> <p>3. ~ 8. (현행과 같음)</p>	<p>- 물가연동국고채 입찰방식이 경쟁입찰로 변경되어 삭제</p> <p>- 호 올림</p>
(신설)	<p><u>부칙 &lt;2022. 2. 3.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이 절차는 202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</p>	- 부칙 신설





